

공 보

제610호 2017. 9. 13.(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111호 도로명주소 고시 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971호 공시송달공고 5

거창군 공고 제2017-990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3-47호선)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
검사 필증교부 6

거창군 공고 제2017-99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
에 관한 조례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
비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8

거창군 공고 제2017-997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를 위한 열람공고 18

거창군 공고 제2017-999호 공시송달공고 【대동리(소로2-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1

거창군 공고 제2017-1002호 거창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23

거창군 공고 제2017-1005호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열람공고 34

거창군 공고 제2017-1007호 거창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 공고 38
거창군 공고 제2017-1010호 보상계획열람공고 【월천지구(소로 3-164, 3-165호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40
거창군 공고 제2017-1011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48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9. 1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57 외 11건(부여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18-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76-3	2009-07-02	2017-09-13	행정구역명(거창+함양군)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거리 49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231-133	2009-12-28	2017-09-13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1092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로 736-138	2009-12-28	2017-09-13	남하면 지산리를 지나 가조면으로 가는 도로임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74-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378-21	2009-12-28	2017-09-13	남하면 지산리를 지나 가조면으로 가는 도로임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8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57	2009-04-01	2017-09-13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여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703, 70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계동길 169-28	2009-04-01	2017-09-13	거열산성 및 계전 골짜기 동쪽에 자리 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3길 181	2009-04-01	2017-09-13	행정구역명 석강을 이용하여 붙여진 세번째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3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3길 182	2009-04-01	2017-09-13	행정구역명 석강을 이용하여 붙여진 세번째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245-2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월곡길 86-12	2009-04-01	2017-09-13	마을 남쪽 어귀의 청룡날이 반달 같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10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315-5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지경길 5-8	2009-04-01	2017-09-13	영남과 호남의 경계에 있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1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260-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용1길 30	2009-12-28	2017-09-13	마을 남서쪽에 비룡산이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1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울리 78-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풍계2길 30-352	2009-04-01	2017-09-13	위천에서 내려오는 영천과 모동에서 내려오는 냇물경이 합류하여 하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공 시 송 달 공 고

아래 지방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기를 2017년 9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기한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1.

거 창 군 수

별도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4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6-35호(2016. 4. 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47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7. 9. 7.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9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가지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47호선) 개설공사	거창읍 가지리 595번지 일원	소로	3	47	520	6	2,722	경고 제465호 (1992.12.24)	2016. 4. 14 ~2017. 8. 23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필증

귀하(중)께서 제출하신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신청인	성명	거창군수	법인등록번호	611-83-0001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준 공 내 용								
사업명칭	가지리 도시계획도로(소로3-47호선) 개설공사							
사업목적	군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긴급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업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95번지 일원			사업량	L=520.0m, B=6.0m			
시행방법	신청인 직영			시행기간	2016. 4. 14 ~ 2017. 8. 23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전	답	대	잡	구	도	합계
	면적	1,255	1,793	34	34	258	629	4,003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도로						
	면적	4,003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개요	4,003						
소요사업비	1,338백만원			공사완료일	2017. 8. 23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9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font-weight: bold;">거 창 군 수</p>								

거창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거창군수 양 동 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치법규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7.26.)되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규칙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함
 - 11개 조례 15건, 6개 규칙 17건
 -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소방청

3. 제정 조례안 및 규칙안: 붙임 1, 붙임 2

4.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감사실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 우편번호:51032, 전화: 055-940-3073, 팩스: 055-940-3029
이메일: sun815@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일자	2017. .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 자치법규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7.26.)되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함(안 제2조~제12조)

- 11개 조례 15건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방방재청 ⇒ 소방청
- 산업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교유과학기술부 ⇒ 교육부
- 내무부 ⇒ 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제25조, 제26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부서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6) 도내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6조(「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7조(「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8조(「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일자	2017. .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 자치법규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7.26.)되어 행정자치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함(안 제2조~제6조)

- 6개 규칙 17건
-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제25조, 제26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부서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6) 도내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

제1조(「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 제15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제26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정부조직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제목개정 2017.7.26.]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971-383호(1971. 06. 28.)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09. 11.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개요

구분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당초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	거창	대동	소로	2	21	190	8.0	1,548.0	거창읍 대동리 757-1	거창읍 대동리 57	건설부고시 1971-383호 (1971.06.28)	
변경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	거창	대동	소로	2	21	190	8.0	1,618	거창읍 대동리 757-1	거창읍 대동리 56-7	건설부고시 1971-383호 (1971.06.28)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설계도 : 기재생략(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 자	
합계	-	-	-	2,307	711					당초
합계	-	-	-	2,307	772					변경
1	거창읍 대동리	757-1	도	628	66		거창군			당초
2	"	765-4	도	154	19		거창군			당초
3	"	757	대	185	1	거창군 거창읍 시장길 33-3	최민옥			당초
3	"	757	대	185	0	거창군 거창읍 시장 길 33-3	최민옥			변경
4	"	964-64	도	62	39		국(건설부)			당초
5	"	749-3	대	129	93	거창군 거창읍 강양5 길 23	이상호			당초
5	"	749-3	대	129	129	거창군 거창읍 강양5 길 23	사교제종중 외 1인			변경
6	"	756	대	139	58	거창군 거창읍 대동 리 756	윤정임			당초
6	"	756	대	139	53	거창군 거창읍 대동 리 756	윤정임			변경
7	"	749-12	답	214	6	거창군 거창읍 대동 리 684	김성출			당초
7	"	749-12	답	214	6		거창군			변경
8	"	751-2	대	122	6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51-2	조병권 외 1인			당초
9	"	751-8	전	284	106	거창군 거창읍 대동 리 751-8	조경옥			당초
9	"	751-8	전	284	128	거창군 거창읍 대동 리 751-8	조경옥			변경
10	"	751-11	전	20	16	거창군 거창읍 대동 리 751-7	김정규			당초
10	"	751-11	전	20	20		거창군			변경
11	"	751-5	대	213	102	거창군 거창읍 대동 리 765 라일락아파트 이동 202	박원제 외2인			당초
11	"	751-5	대	213	107		거창군			변경
12	"	751-10	전	140	140		거창군			당초
13	"	751-22	전	15	1		거창군			당초
14	"	751-23	전	2	1		거창군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소계	-	-	-	2,045	837					당초
소계	-	-	-	2,855	846					변경
15	거창읍 대동리	759-8	대	175	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75-25(신암동)	정춘화			당초
15	"	759-8	대	175	0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75-25(신암동)	정춘화			변경
16	"	749-16	답	63	63	부산광역시 남구 감 만동 225-2 감만현대 아파트 202-2002	신기재			당초
16	"	749-16	답	63	63		거창군			변경
17	"	751-20	도	171	8		거창군			당초
18	"	749-15	도	242	10		거창군			당초
19	"	749-6	답	177	167	부산광역시 남구 감 만동 225-2 감만현대 아파트 202-2002	신기재			당초
19	"	749-6	답	177	177		거창군			변경
20	"	62-6	전	497	497	거창군 거창읍 정장2길 31	김광욱			당초
20	"	62-6	전	497	497		거창군			변경
21	"	57	전	720	91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17 202호(유빌리지2차)	신용휘			당초
21	"	57	전	720	0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17 202호(유빌리지2차)	신용휘			변경
22	"	56-7	도	810	91		거창군			변경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열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 : 50132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이나 전화(055-940-3594), FAX(055-940-3579), E-mail(sbin02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공시송달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중인 “대동리(소로2-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를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대동리(소로2-2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 사 업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일원
3. 사업시행자 : 거창군청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 고 장 소 : 거창군청·관내 읍면사무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협의장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4)
7. 기 타 사 항 :
 -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협의보상에 관한 방법, 절차, 시기, 구비서류 등 보상협의를 위하여

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내역: 붙임

붙임

공 시 송 달 내 역

연번	소재지 (거창군)	편입번지 (분할전)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 소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상)	성명	
1	거창읍 대동리	749-3	대지	129	거창군 거창읍 동동 769	사교제종중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재난안전 강화를 위하여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3조~제6조)

(1)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라. 위원회 운영을 정함.(안 제7조)

- (1) 회의개최 :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소집요청시
 - (2) 의결정족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다. 협조요청 및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8조·제9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5.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2. ~ 2017. 10. 2.(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 055-940-3633, fax 940-362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 940-36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일자	2017. . .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1. 제안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재난안전 강화를 위하여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3조~제6조)

(1)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라. 위원회 운영을 정함.(안 제7조)

(1) 회의개최: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소집요청시

(2) 의결정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마. 협조요청 및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일이상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 의뢰

(6)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경남 18개 시·군)

제정(7)	입법예고(5)
거제시, 창원시, 김해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통영시, 의령군, 합천군, 함양군, 함안군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 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53호, 2017.1.1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제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전문제정 2010.6.8.]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제정]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1. 당연직 위원

-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정 2014.11.19., 2017.7.26.> [전문제정 2014.2.5.]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 2015.6.30.>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 2015.6.30.>

[전문제정 2014.2.5.]

[제목제정 2015.6.30.]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삼봉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7. 09. 12.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명칭 : 삼봉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2. 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3.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88번지 일원

4.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다목적센터 1식 외 부대공사)

5. 공고기간 : 2017. 09. 12. ~ 2017. 09.26.(14일이상/초일불산입)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
과 농촌개발담당 ☎ 055-940-8257】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
다.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불임

[붙임]

□ 토지조서

일 련 번 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	고제면 농산리	88	답	폐답	182	182	미등기		김호륜	농산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 물건조서

일 련 번 호	수용물건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산청군)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해	당	없	음				

의 견 서

제 목		
소유자	성 명	
	주 소	
사 업 시행자	사업자명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사 업 명	삼봉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수용대상토지, 물건내역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88
의 견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17. . . .</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p> <p>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p>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거창군 공고 제2017 - 1007호

거창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3단계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거창군 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09. 12.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 2) 명 칭 : 거창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3단계 조성공사
3. 사업규모
 - 총 면 적 : 67,697m²
 - 기 시 행 : 42,346m²
 - 금회시행 : 25,351m²
 - 매립용량 : 156,890m³
4. 사업 시행자
 - 가)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나) 성명 : 거창군수(녹색환경과장)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년 12월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보 상 계 획 열 램 공 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월천지구(소로3-164,3-16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9. 13.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월천지구(소로3-164,3-16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393.0m, B=6.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 외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상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5)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결과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거창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로 통지

6.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 (토지,소로3-164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728					
1	거창읍 동변리	514-2	도	53	24	거창읍 동변리	표 * 준			미등기
2	"	1164-2	도	6588	210		국(건설부)			
3	"	514-4	대	55	55	거창읍 동변리	표 * 준			미등기
4	"	514-3	도	56	56	거창읍 동변리	표 * 준			미등기
5	"	512-6	대	56	56		거 창 군			
6	"	511-1	도	131	131		거 창 군			
7	"	512-5	대	16	16		"			
8	"	511-2	대	74	74		"			
9	"	211-2	대	36	36	거창읍 동변리 **	유 * 순			
10	"	205-1	대	24	24		거 창 군			
11	"	211-1	도	72	61		거 창 군			
12	"	210-1	대	27	27		"			
13	"	209-1	대	71	71		"			
14	"	213-1	도	27	21		"			
15	"	213-2	대	24	24		"			
16	"	215-3	대	331	125	거창읍 동변리 **	신 * 중			
17	"	215-8	대	153	153	거창읍 동변리 **	신 * 중			
18	"	216-1	대	5	5	거창읍 동변리 **	신 * 중			
19	"	215-7	대	44	44	거창읍 동변리 **	신 * 중			
20	"	227-2	대	250	235		거 창 군			
21	"	227-1	도	126	86		거 창 군			
22	"	226-2	도	34	23		"			
23	"	226-3	전	171	171		"			

○ 보상조서 (토지,소로3-165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266					
1	거창읍 동변리	1160-30	구	21,746	30		국(건설부)			
2	"	1164-2	도	6588	431		국(건설부)			
3	"	187-3	도	30	19		거창군			
4	"	241-3	창	33	33		거창군			
5	"	188-1	도	29	29		"			
6	"	240-2	답	34	34		"			
7	"	188-2	답	18	18		"			
8	"	240-1	도	10	10		"			
9	"	239-1	대	12	12		"			
10	"	189-3	답	20	20		"			
11	"	190-2	답	1	1		"			
12	"	190-1	도	69	19		"			
13	"	191-1	도	37	19		"			
14	"	235-2	대	28	28		"			
15	"	235-1	도	5	5		"			
16	"	234-6	전	25	25		"			
17	"	234-4	도	6	6		"			
18	"	192-2	대	30	30		"			
19	"	234-5	전	89	89		"			
20	"	192-1	도	10	10		"			
21	"	234-3	도	5	5		"			
22	"	233-1	도	3	3		"			
23	"	233-2	대	16	16		"			
24	"	193-6	대	6	6		"			
25	"	193-4	도	7	7		"			
26	"	193-5	대	54	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	표 * 길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7	“	231-4	대	19	19		거 창 군			
28	“	193-3	도	68	6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	표 * 길			
29	거창읍 동변리	231-3	도	9	9		거 창 군			
30	“	194-2	대	46	46		거 창 군			
31	“	194-1	도	19	19		“			
32	“	195-3	대	61	61		“			
33	“	195-2	도	20	20		“			
34	“	227-2	대	250	15		“			
35	“	227-1	도	126	23		“			
36	“	226-2	도	34	5		“			
37	“	226-3	전	171	31		“			

○ 보상조서 (지장물, 소로3-164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	거창읍 동변리	211	가옥	목조강판 13.1×7.0	91.7		거창읍 동변리 **	유 * 순			
2			창고	블록스레트 4.7*10.5	49.35		"	"			
3			마당	콘크리트	20		"	"			
4			담장	블록 34.9*1.5	52.35		"	"			
5			대문	철재	1		"	"			
6			다용도 실	블록스레트 1.7*7	11.9		"	"			
7			앵두나 무	18년	1		"	"			
8			황매화	18년	1		"	"			
9			사철나 무	18년	1		"	"			
10			향나무	43년	1		"	"			
11			화단	-	20		"	"			
12			장독대	-	6		"	"			
13			수도전	-	1	식	"	"			
14			관정	소형	1.0	식	"	"			
15			부엌 가추	철골합석	12.0	m ²	"	"			
16	거창읍 동변리	216	대문	목구조기와 4.5*3.0	1	식	거창읍 동변리 **	신 * 중			
17			마당	콘크리트	37	m ²	"	"			
18			담장	토담기와 16*2	32	m ²	"	"			
19	거창읍 동변리	215-1	창고	조립식 8.0*4.1	32.8	m ²	거창읍 동변리 **	백 * 인			
20			마당	콘크리트	64	m ²	"	"			
21			담장	블록, 테크포함 21.3*1.0	21.3	m ²	"	"			

○ 보상조서 (지장물, 소로3-165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	거창읍 동변리	193-1	가옥	목조강판 2.9*3.8+ 6.4*10.4	77.58	m ²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	표 * 길			
2			창고	스레트 1.8*10.2+ 4.0*2.3	27.56	m ²	“	“			
3			창고	스레트 3.3*3.6	11.88	m ²	“	“			
4			화장실	블록슬라 브1.5*3.0	4.5	m ²	“	“			
5			마당	콘크리트	45.5	m ²	“	“			
6			담장	블록 6.7*1.8	12.06	m ²	“	“			
7			가옥	블록슬라 브4.8*5	24	m ²	“	“			
8			하우스	4.8*5	24	m ²	“	“			
9			계단	-	5	m ²	“	“			
10			수도전	수도꼭지 2개등포함	1	식	“	“			
11			감나무	33년	1	주	“	“			
12			매실나 무	23년	1	주	“	“			
13			물앵두	13년	2	주	“	“			
14			기타수 목	13년	4	주	“	“			
15			울타리	철파이프	15	m	“	“			
16			하우스	-	24	m ²	“	“			
17			아궁이	-	3	식	“	“			
18			지하수	-	1	식	“	“			
19			우물	-	1	식	“	“			
20			계단	-	2	m ²	“	“			
21			담장	-	14	m ²	“	“			

<붙임 : 의견서 >

『월천지구(소로3-164,3-16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2017.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공고 제2017-101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거 창 군 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화성종합건설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최 * 탁
3. 영업소소재지 :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7-1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제1호
6. 등 록 일 자 : 2017년 9월 12일